

무료법률지원 대상자 구비 서류

대 상 자		구비 서류	공 통	비 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▪ 지원 금액이 입금된 통장 사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주민등록등본 	
<p>「법률구조법」 제7조 제2항이 정한 자 중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도민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보훈처 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▪ 국가유공자 수급권자인 경우 국가유공자유족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주민등록등본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보훈처에서 발행한 독립유공자증명서 또는 독립유공자증 ▪ 독립유공자 수급권자인 경우 유족 증명서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5.18민주 유공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보훈처에서 발행한 5·18민주유공자 증명서 또는 5·18민주유공자증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기초생활수급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아동복지법」 상 요보호 아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상담소 또는 시설 등에서 발급한 보호대상아동 사실확인원 		

대 상 자		구비 서류	공 통	비 고
「법률구조법」 제7조 제2항이 정한 자 중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도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기초연금법」 제3조에 따른 연금 지급대상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초노령연금 지급 통보서 사본 연금이 입금된 본인 통장 사본 	주민등록등본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2항의 장애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·군·구, 읍·면·동사무소 발행의 장애인 증명 또는 복지카드 (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 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자)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모·부자가정 : 한부모가족증명서 미혼모·부가족, 기타 한부모가족 : 가족관계등록부, 주민등록등본,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하는 증인진술서 중 택일 조부모가족 : (외)조부모 및 손자녀 가족관계등록부, 주민등록등본, 조손가족임을 증명하는 증인진술서 중 택일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·어업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·군·읍·면장 발행의 증명서 또는 농·수협 발행의 회원증명서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참전유공자증 사본 		

대 상 자		구비 서류	공 통	비 고
「법률구조법」 제7조 제2항이 정한 자 중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도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 제7항에 따라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증명 자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주민등록등본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특수임무수행자 등록증 사본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내 거주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범죄피해자보호법」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범죄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▪ 판결문, 공소장, 범죄피해사실증명원, 사건처분결과통지서 중 택일 ▪ 단, 절도·사기·횡령·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은 유죄판결문 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중위소득 80%이하의 도민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▪ 건강보험료확인서(최근 3개월 이상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주민등록등본 	

대 상 자	구비 서류	공 통	비 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위소득 80%이하의 도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득 증빙자료 [직장인의 경우] 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지급명세서(최근 3개월 이상, 직장에서 발급) [직장인 외의 경우(자영업자 등)] : 국민연금 지급내역확인서(연금공단 발행) 또는 소득금액증명서(세무서 발행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등록등본 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위소득 80%이하로서 「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」 제2조제2호에 의한 외국인 주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외국인 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(대한민국 국적 취득자) 위 내국인 중위소득 80% 이하 도민 제출자료와 동일 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족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음의 서류 중 해당서류 하나 이상 여성폭력관련 상담소 및 시설에서 확인한 가정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원 진단서(가정폭력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, 진단서 또는 소견서) 고소장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등록등본 	

대 상 자	구비 서류	공 통	비 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소년·소녀 가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가족관계증명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주민등록등본 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가족관계등록부 미등록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가족관계등록부부존재 증명서 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그 밖에 경제적 곤궁으로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한 도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중위소득 80%이하의 도민 판단에 필요한 자료 준용 		